의안번호	제 639 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1년 1월 11일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장선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9

발의연월일 : 2021년 1월 11일
발 의 자 : 장선배, 박형용, 이숙애, 이상욱, 이의영, 허창원 송미애

1.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 도 협의회와 시·군 협의회 간의 제1호와 관련된 협력 사업 및 사회복지 종합정보 연계체계 구축
-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교부, 관리, 평가,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5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조례안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1-4호
다. 협 의 :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라.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도 협의회”라 한다)가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 협의회”라 한다)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도 협의회와 시·군 협의회 간의 제1호와 관련된 협력 사업 및 사회복지종합정보 연계체계 구축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도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준용) 도지사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관리, 평가,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②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관하여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제7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④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업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2.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5.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6.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7.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8.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9. 시·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도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0.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1.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상호협조) 각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호협조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시·군 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지역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임.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및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관련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 조례안 제4조(보조금 지원)

4. 비용 추계결과

○ 재정수반 요인 :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및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지원

○ 추계의 전제

-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필요 비용은 '21년 운영비 지원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상률을(2.8%) 고려하여 산출
- 도 협의회와 시·군 협의회 간의 협력 사업 및 사회복지종합정보 연계체계 구축 비용은 현재 시·군 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시·군 간 복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예산기준으로 작성하되, '22년 개소당 10,000천원 기준, 미지원 시·군 추가 지원 등을 고려하여 산출

○ 추계결과 : 2021년부터 향후 5년간 1,992,548천원 ※연평균 398,509천원

○ 재원조달방안 : **도비 1,615,748천원, 시·군비 376,800천원**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연도별 비용추계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372,642**	**387,801**	**404,132**	**410,641**	**417,332**	**1,992,548**
도 비		307,842	315,801	324,132	330,641	337,332	1,615,748
시·군비		64,800	72,000	80,000	80,000	80,000	376,800
세 출		**372,642**	**387,801**	**404,132**	**410,641**	**417,332**	**1,992,548**
충청북도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 (도 100%)		291,642	297,801	304,132	310,641	317,332	1,521,548
	인건비	219,965	226,124	232,455	238,964	245,655	1,163,163
	운영비	11,377	11,377	11,377	11,377	11,377	56,885
	사업비	60,300	60,300	60,300	60,300	60,300	301,500
시·군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지원 (도20%, 시군80%)		81,000	90,000	100,000	100,000	100,000	471,000